

“돌보는 의료”주치의 협약서

본 협약은 함께걸음의사협의 마을의원(이하 “마을의원”)과 시니어케어24노원(이하 “시니어케어”)은 상호 협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생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시니어케어24 노원”의 직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건강진료 서비스 제공 및 방문진료,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마을의원”과 협업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정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양 기관의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

제 3조 (마을의원의 협력사항)

마을의원은 시니어케어24 노원의 직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센터 직원의 진료와 치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직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건강강좌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한다.
3. 지역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 참여한다.
4. 마을의원은 센터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① 센터 직원의 비급여 진료비, 건강진단, 각종 예방접종 등은 조합원과 같이 할인 적용할 수 있다.
②센터 직원에게 특화된 직장검진을 공동기획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제4조 (시니어케어24 노원의 협력사항)

시니어케어24 노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센터 직원의 의료서비스 필요시 마을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센터 직원의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마을의원과 협의하고 마을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센터 직원의 진료 의뢰시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센터 직원이 마을의원으로 진료를 받을시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행하거나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할 수 있다.
5. 센터는 마을의원의 "돌보는 의료" 주치의 협력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한다.

제5조 (세부사항)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한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공생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만료시 본 협약 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정보의 공유)

양 기관은 상호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사전에 상호협약한다.

제8조 (기타사항)

1.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변경 혹은 추가 사항을 결정한다.
2.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각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5월 8일

시니어케어 24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693번지

미도빌딩 603호

02)936-7277

지부장 임성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노원구 상계로1길 14-11,

하이웰빙상가 501호

02) 937-5368

이사장 남명희

